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98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김미애・이수진・백종헌

최형두 · 조경태 · 조승환

서지영 • 이인선 • 김예지

안상훈 • 한지아 • 최보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 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 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각각 "장애인용 쇼핑 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u>장애인용</u>	<u>장애인용</u>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
한다.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u>이하 같다) 등을</u>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②
안내책자, 보청기기, <u>장애인용</u>	<u>장애인</u>
<u>쇼핑카트 등</u> 을 갖추어 두어야	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설 등
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	
책자, 보청기기, <u>장애인용 쇼핑</u>	
<u>카트 등</u> 갖추어 두어야 할 용	<u>장애인용 쇼핑카트, 전</u>
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	동보장구충전시설 등
으로 정한다.	

③ 저]1항에	따른	휠체	어,	점자
안내	책자,	보청기	7],	<u> 장애</u>	인용
쇼핑>	카트 등	<u>등</u> 의	이용료	는	무료
를 원	년칙 으 로	리 하	되, 수	리	비용
등을	고려さ	하여	실비료	<u> </u>	수
있다.					

③	(3)
<u>장애인</u>	
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	용
설 등	<u>설</u>